

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팀 최소 재적 기간 운영 관련 경기인등록규정 의견 조희 요청

1. 귀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저희회는 『경기인 등록규정』 제23조(활동 제한 및 예외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“회원종목 단체는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.”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다만, 이와 관련한 회원종목단체별 규정에 따라 선수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, 붙임 자료와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요청사항 : 시·도 종목단체, 지도자,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요청
- 제출기한 : **2026. 6. 25.(목)**까지 【붙임 1】을 작성하여 “공문”으로 회신
- 향후계획 : 소속팀 최소 재적 기간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 예정

붙임 선수 이적 시 출전제한 규정 개선계획(안) 1부. 끝.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 회원종목단체장_정회원, 회원종목단체장_준회원, 시도체육회장

전결 06.16.

★대리

최영금

부장

홍우택

협조자

시행 대회운영부-5597 (2026.06.16)

접수

우
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
대한체육회)

/ <http://www.sports.or.kr>

전화

전송

/ 1004@ggsc.or.kr

/ 공개